

2019년도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6.(화요일), 11:00
-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3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73건(안건번호 제2019-86989호~8874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86989호~86994호 블로그에서 최신 대중가요 음원파일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해당 음원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67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41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3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정현순 전문위원 : 회의록 8쪽의 사행성 사이트 주소는 현재 접속차단 되었지만 사이트 주소가 공개되면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사이트 주소는 '사행성 사이트'로 표기하고 주소는 익명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동의하며 나머지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회의록의 사행성 주소만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정현순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86989호~88746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873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86989호~86994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서 가수들의 최신 대중가요 실연 음원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화면을 제시하면서)게시글에는 간단한 앨범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앨범 자켓 이미지와 가사가 첨부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2건의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고 1건은 유튜브에 링크되어 있고, 나머지 1건은 네이버 자체에 저장되어 있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6989호~8699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동일인이 하나의 영상을 유튜브와 네이버에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유튜브 영상물과 네이버 영상물의 화면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일인이 제작해서 올렸을 가능성이 있음
 - A 위원 : 유튜브 영상이라면 침해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권리자가 유튜브 영상물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유하기로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하지만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영상을 네이버에서도 제공하고 있어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 전송자는 같은 형식으로 여러 개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음
- A 위원 : 이와 같은 게시물 수집 건을 올려 게시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있는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광고가 붙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취미 또는 단순 공유의 목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물은 배경음악으로 음원파일을 제공하면서, 해당 곡이 수록된 앨범 표지 이미지 및 가사를 함께 이용하고 있음
가사 전체와 음원 전체분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등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저작권 침해임에는 틀림이 없음
- B 위원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물론이고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86989호~86994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86995호~8874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 안전번호 제2019-86995호~88746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최근에 모바일 웹하드에 대한 심의 요청이 많은데 안전번호 제2019-86995호는 한 명의 게시자가 드라마 152개를 올린 것임
 제2019-86998호~87009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네이버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형태임
 폰트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는 폰트가 불법복제되고 있는 건도 상당히 많음
- A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방송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물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B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6995호~8874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19-86989호~88746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13.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